

#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96

2019. 9. 15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김은희 연구위원

### ■ 요약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15%로 고령사회가 본격화되었고,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노인인구로 구성될 것이라 전망됨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노인의 주요 활동 공간인 생활 공간에서는 넘어짐,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고(40%), 화재 등 긴급 사고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대형 인명 피해 위험에 더욱 취약한 실정
-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정책제안

- 노인의 일상 활동 공간에서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 입소자,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거실 및 접견실 설치, 신체상태 악화에 대응하는 치매전담실 설치, 세탁장·화장실 등의 세부기준 마련 등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기준 정교화
-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거실·침실·조리실과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훌·복도·계단 등 피난공간의 내화성능을 강화하고, 신체 약자인 노인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건축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방화구획·피난시설·마감재료·소방시설 설치규정 강화

##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 대두

-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총 인구 규모는 감소하고,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9년 현재 전체 인구의 15%(707만 명)에 근접하였으며 2060년에는 약 40%(1762.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sup>1)</sup>
-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비자가주택 비율은 26%지만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35.5%로 증가하며, 가구 형태별로는 독거노인일수록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기타 시설의 거주비율이 25.1%로 높게 나타남<sup>2)</sup>
-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더불어 노인의 생활안전사고와 화재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낙상(떨어짐, 넘어짐 등)’ 경험자가 전체의 20%에 이르며, 화재 시 노인 피해도 대형<sup>3)</sup>으로 발생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등 주거복지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주택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건축 및 설비기준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 변화, 이용자 특성에 맞는 안전성 확보 관련 상세 규정은 다소 미흡한 실정
- 고령사회 노인의 거주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 세부 규정을 보완하며, 이에 앞서 안전한 건축물 조성이 선행될 수 있는 계획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

## 2 노인주거복지시설 건축물 및 안전사고 현황

### ■ 노인주거복지시설 건축물 수 및 입소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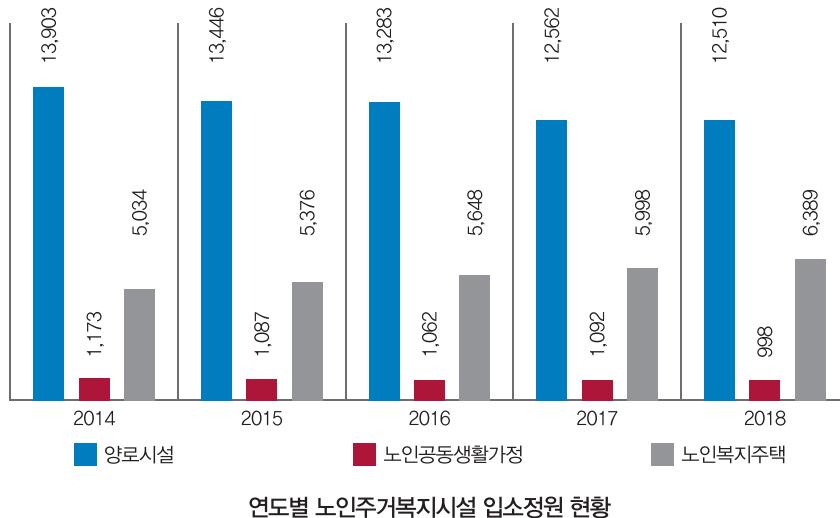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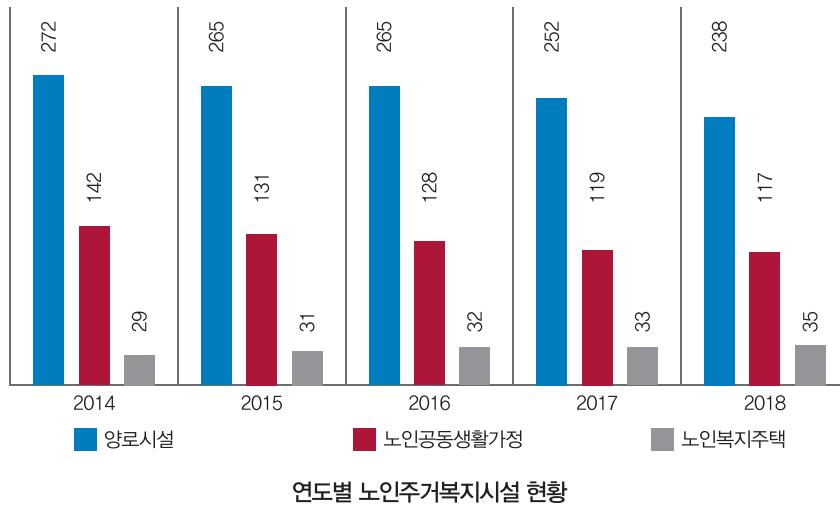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총 390개소로 이 중 양로시설이 62%로 가장 많고 소규모 노인공동생활가정이 30%, 아파트 형태의 노인복지주택이 8%로, 대부분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1)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12월 7일자 보도자료, p.1 참조

2) 통계청, <http://kosis.kr/search/search.do>.(2011년 통계가 최근 자료임)

3) 최근 발생한 2018년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전체 사망자 47명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사망자 수 46명에 이르고 부상자 107명 중 대부분이 노인(<https://namu.wiki/>)

- 최근 5년간 시설 증감 추이 살펴볼 때 2014년 대비 2018년 해당 시설 수는 평균 약 88% 감소<sup>4)</sup>했는데 양로시설은 시설 수 87.5%, 입소자 수 90%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설 수 82%, 입소자 수 85%로 감소한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시설 수 120%, 입소자 수 127%로 증가



4)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감소한 반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증가하는 추세

##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축물 상태

###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규모

- 소화시설 설치기준인 면적(소화시설 설치기준 300m<sup>2</sup>, 400m<sup>2</sup>, 600m<sup>2</sup>)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규모는 양로시설의 경우 300m<sup>2</sup> 이상이 90%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은 300m<sup>2</sup> 미만이 56% 이상, 400m<sup>2</sup> 미만도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피난계단 설치기준인 층수(5개 층)를 기준으로 시설규모를 조사한 결과, 양로시설은 4층 이하가 75%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층이 50%로 나타남<sup>5)</sup>

###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준공 후 경과연수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점인 준공 후 10년을 기준으로 시설 노후도를 살펴보면 양로시설은 준공 후 10년 미만이 약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약 33%를 차지하며 20년 이상 건축물도 18%로 파악됨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준공 후 10년 미만이 약 46%,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약 50%로 안전관리 차원의 점검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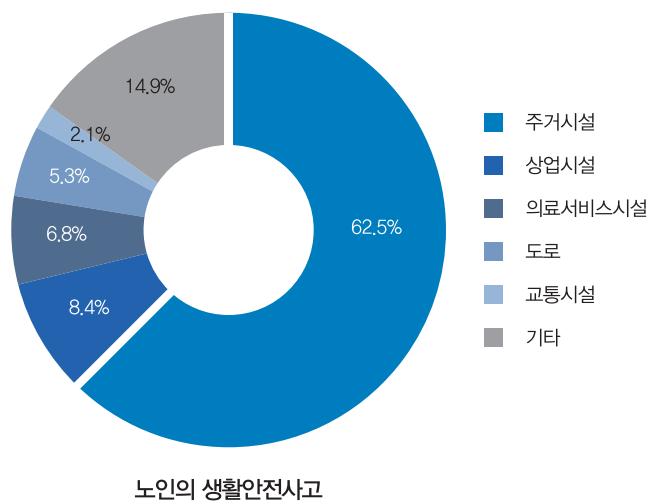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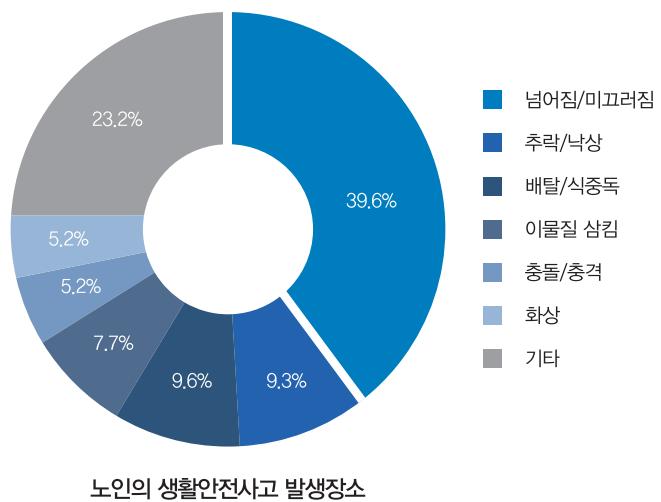
###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주체

- 양로시설은 45%, 노인공동생활가정은 84%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반면 규모가 큰 노인복지주택은 영리법인 주식회사의 비중(52%)이 가장 높음

## ■ 노인 관련 안전사고

- 노인의 생활안전사고는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 발생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
  - 일반적으로 노인의 생활안전사고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62.5%) 세부 공간별로는 침실, 마당, 화장실 및 욕실, 출입구·복도·계단, 거실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음
  - 생활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내부마감재, 특히 욕실 및 화장실, 계단, 복도에 사용되는 바닥 마감재료가 지목되며 기타 침실가구(침대) 등 가구류의 규격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5) 대부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직피난 통로는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노유자시설의 화재사고는 연간 약 110건이고 이 중 노인 관련 시설이 약 30%를 차지

#### 노유자시설에 대한 연평균 화재 발생 현황

구분	건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기타
합계	128	61	3	40	8	16
백분율	100%	47.7%	2.3%	31.3%	6.2%	12.5%

※ 출처 : 통계청(2007~2015), 화재장소에 대한 월별 재산피해현황

- 화재의 발생 원인은 사용자 부주의가 대부분이지만 피해 확대의 원인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피난통로 차단, 유독가스 유발 마감재 및 물건의 적치 등이 지목됨
- 특히 신체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화 및 내화, 소화시설이나 피난통로 등 대피공간의 계획과 관리 부실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관련 법제도 현황

#### ■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제도

-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률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에서 소관하며 각각의 법률 운영 취지에 맞게 시설 유형, 적용 대상 및 내용을 차별화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축 유형은 「노인복지법」의 경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건축법」은 노유자시설과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반시설 중 사회복지시설로 구분
  -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인 학대 등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설기준·설치·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기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거기본법」은 주거약자, 사회취약계층 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주요 법제도

소관 부처	법령명	제정 연도	관련 내용	대상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1970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사회복지 증진 • 사회복지시설 통합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1981	• 노인보건복지증진을 위해 심신건강 유지, 노후 생활안정 강구 • 노인복지시설 정의, 노인복지시설별 설치기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	• 고령사회 생활환경, 안전보장 등 기본계획 수립 • 노후생활환경을 조성, 재해, 범죄 등 예방을 통한 안전생활	-

###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주요 법제도

소관 부처	법령명	제정 연도	관련 내용	대상
국토 교통부	건축법	1962	• 건축물 용도 분류(노유자시설) • 건축물 유지관리, 구조재료, 건축설비, 안전점검	노유자시설
	주택법	1972	•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 입주자의 별도 모집조건 및 복리시설 설치대상 • 국민주택규모로 건설될 수 있는 비율	입주자 복리시설
	공공주택 특별법	2003	• 입주자 선정 기준 및 특례 •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 우선공급	노인 등 주거취약 계층의 공공주택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 주거약자용 주택 설치에 관한 세부규정 및 설치기준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기본법	2015	• 주택의 공급 기준 및 비율, 주거약자에 관한 지원 • 자치법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개조 자금 지원 및 복지사업지원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3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규모, 용도, 수용인원에 따른 소방 설비 기준 • 경보 · 피난 설비, 동선 및 피난 방법	노유자시설

###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관련 규정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행 규정은 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안전’ 기준과 사용자의 편의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활안전’ 기준으로 구분
  - ‘시설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물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의 ‘구조안전’과 ‘화재안전’으로 구분
  - ‘생활안전’ 관련 규정은 시설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필요면적 확보, 인증제도 등에 관한 ‘생활편의’와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방범’으로 구분<sup>6)</sup>

### 물리적 공간환경의 안전성에 관한 관련 규정

구분		관련 법령
시설안전	구조안전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안전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안전	생활편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기본법
	생활방범	건축법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6) 구조안전 규정은 일반구조, 구조부재, 내진, 안전진단, 모니터링으로 구분. 우선적으로 노유자시설은 구조와 관련하여 구조내력, 구조안전의 확인, 설계하중, 구조계산, 허용지내력 등의 사항을 적용해야 함

-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내화구조, 방화구획, 피난, 마감재료,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건축물 내화구조 및 방화벽 구획 의무 대상이며 방화구획에 관해서는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관련 사항을 적용
  - 또한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으로 화재안전기준 적용 시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생활안전 관련 규정은 편의시설, 주거기준, 방범, 인증 및 평가로 분류
  -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는 최저주거기준으로서 출입문,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의 계획기준을 제시
  - 또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며 신축 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

####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규정

화재안전 규정	
내화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li> <li>•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li> </ul>
방화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li> <li>• 방화구획 등의 설치</li> <li>•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li> </ul>
피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li> <li>• 직통계단의 설치</li> <li>• 피난계단의 설치</li> <li>• 건축허가서</li> </ul>
마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마감재료</li> <li>•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li> </ul>
소방시설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li> <li>•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li> <li>•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li> <li>•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등</li> </ul>
방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li> </ul>

생활안전 규정	
생활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과 안전보장</li> </ul>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시설</li> <li>• 시설주 등의 의무</li> <li>• 편의시설의 설치기준</li> <li>• 편의시설의 종류</li> <li>•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li> <li>•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 감독</li> <li>• 실태조사</li> <li>•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li> <li>• 설치계획의 수립 · 시행 및 보고</li> <li>•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li> <li>•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li> </ul>
주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주거기준의 설정</li> <li>• 최저주거기준의 내용</li> <li>•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범죄예방</li> </ul>
인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li> <li>•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li> </ul>

##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관련 시설계획기준

-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기준, 지침, 매뉴얼 등은 시설계획 및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프리 디자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계요소 및 요소별 상세 치수를 제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은 생활안전사고와 관련된 평가항목과 내용, 사례 등을 제시하고 설치수준을 설명함
  -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공동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기준을 제시하며 공동주택단지 일부나 전체에 적용함
  -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를 위한 설계지침’은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거시설 내부의 표준화 고려 대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발코니,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장치 등이 해당됨
  -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은 고령자의 주거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으로서 실질적인 주택개조에 이용 가능한 ‘사용자용(노인) 지침’과 개조를 담당하는 전문가용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로 구분할 수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기준, 지침 등

제목	연도	발행처	관련 내용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제2006-6733호)	2006	국토교통부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의 일반적 계획원칙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를 위한 설계지침(KSP 1509)	2006	기술표준원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실별 계획치수
노인가구 주택 개조 매뉴얼	2007	건설교통부, 한국주거학회	노인 가구를 위한 각 공간 시설의 개조 기준 및 치수계획
Barrier-Free 주거매뉴얼	201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무장애 주거공간 실별 설계기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건축편)	2012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례 제시, 편의시설 설치수준 설명

###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 관련 법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노인복지 관련법은 최소한의 기능적 거주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제한되어 있고, 건축 및 소방 관련법에서도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일반적인 시설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특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물리적 상태, 운영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규정은 미흡한 실정
- 따라서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 생활편의 증진 차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설치 및 설비기준을 보완·구체화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건축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방화구획 및 소화설비설치, 마감재료, 소방시설기준 강화

## 4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개선

- 시설기준 중 ‘거실’, ‘커뮤니티라운지’, ‘치매전담실’ 추가
  - 주거시설은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이 배치되므로 노인의 일상생활 속 안전 여부 확인, 비상시 이동 및 대피공간 확보 시설로 ‘거실’ 추가
  - 입소자 및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관계자 등 외부와 소통, 안전성 확보 연대를 위해 입소자 30명 이상의 대규모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은 ‘커뮤니티라운지(접견실)’ 추가

- 입소자의 점진적인 고령화와 실제 시설활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 30명 이상의 대규모 양로시설은 ‘치매전담실’ 추가<sup>7)</sup>

- **설비기준의 상세 계획기준 마련**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중 설비기준이 부재한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화장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에 대한 상세 계획기준 마련
- 특히 대부분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설비기준(‘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마련

### **■ 「건축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방화구획 및 소화설비설치, 마감재료, 소방시설기준 강화**

- **방화구획 및 소화설비설치 규정 강화**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공간의 내화성능을 높이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 내 거실과 침실, 조리실과 화재 시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흘(거실), 복도, 계단에 대한 방화구획과 내화성능 및 방염성능 개선, 소화 성능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자연환기가 불가한 지하층은 면적에 관계없이 방화구획을 의무화
- 소규모로 조성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화재감지 및 경보,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규정 강화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중 마감재료 설치기준 개선**

- 가장 일반적인 노인 생활안전사고인 넘어짐이나 미끄러짐과 관련하여, 현행 「건축법」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 규정과 더불어 사고 발생 시 골절 등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마감재료 및 공법 규정으로서 「건축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중 바닥마감재의 시공 방안 추가

7) 본 원고 관련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로시설 입소자 중 활체어 사용자가 많고 치매환자까지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8) 김은희·변나향(2017),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의 노인주거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운영하도록 제안. 본 가이드라인은 총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노인주거복지시설 실내공간, 실외공간, 실내공간요소, 설비시설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강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바닥면적 600m<sup>2</sup>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300m<sup>2</sup> 이상 600m<sup>2</sup> 미만, 또는 창살이 설치된 시설로 300m<sup>2</sup> 미만), 비상경보설비 및 자동화재탐지기(400m<sup>2</sup> 이상)의 설치 대상을 바닥면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노인 이용자의 피난 능력을 고려하여 노유자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시설 설치 의무화

### • 피난시설의 설치기준 강화

- 현행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의 별표 1의 노유자시설은 2층 이상의 층에서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설치되어 시설규정 적용이 불가한 상황

- 따라서 별표 1의 '그 밖의 것'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2층 이상 시설에 대한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완강기 사용이 허용되는 3층 이상의 시설은 노인이 사용하기 불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난기구 허용대상에서 삭제

김은희 연구위원 (044-417-9622, ehhkim@auri.re.kr)



관련 보고서 원문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박소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7 [www.auri.re.kr](http://www.auri.re.kr)

